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68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한무경ㆍ이주환ㆍ김정재

허은아 · 구자근 · 양금희

권명호 · 김영식 · 강민국

서일준 · 최승재 · 윤주경

권성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 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 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 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
<신 설>	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 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① 여 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